공정거래위원회 | 보도참고자료 |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2026. 11. 13.(금) 10:00 / 배포 2026. 11. 13.(금) 08:30

공정위,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7종 개정

- 대금 지급 기산일 명확화 및 사전 협의되지 않은 비용의 사전 통지 의무 강화 -

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주병기, 이하 '공정위')는 **납품 대금 지급 기산일**인 **상품 수령일의 기준**이 **상품 인도 시**라는 점을 **명확하게** 하고, 대규모유통업자가 광고비 등 **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**을 납품업자에게 **부과**하는 것을 **방지**하기 위해 유통분야 **표준거래계약서**(이하 '표준계약서') **7종***을 **개정**하였다.

* 온라인쇼핑몰 2종(직매입, 위수탁거래), 백화점·대형마트 2종(직매입, 특약매입), 면세점(직매입), 편의점(직매입), 티브이홈쇼핑

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('12.1.1.) 이후 현재까지 거래유형·업태별 **총 10종**의 **표준계약서**를 **마련**하여 **보급**하였으며, 업계 요구 및 관련 제도 개선 등 개정 수요에 따라 개정해 오고 있다.

<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현황 >

계약 유통업체	표준거래계약서 종류	비 고
백화점·대형마트	① **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(백화점, 대형마트)**	**개정 대상**
	② **특약매입 표준거래계약서(백화점, 대형마트)**	**개정 대상**
	③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(백화점, 대형마트 등)	
편의점	④ **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(편의점)**	**개정 대상**
온라인쇼핑몰	⑤ **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(직매입거래)**	**개정 대상**
	⑥ **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(위수탁거래)**	**개정 대상**
티브이홈쇼핑	⑦ **티브이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**	**개정 대상**
면세점	⑧ **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(면세점)**	**개정 대상**
	⑨ 특약매입 표준거래계약서(면세점)	
아울렛·복합쇼핑몰	⑩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(아울렛, 복합쇼핑몰)	

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은 **대금 지급 기산점의 기준**을 **명확하게** 하고, 거래 과정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**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추가 비용**을 **부담**시키는 등 **불합리한 관행**을 **개선**하기 위함이다.

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 기산일인 상품수령일은 상품을 인도받은 날이라는 점을 표준계약서에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. 또한, **검수 관련 조항**을 **대금 지급 관련 조항 뒤로 순서**를 **조정**하여 **상품수령일**이 **상품 검수 이전**인 **인도일**이라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하였다.

아울러, 기존 4종*의 표준계약서에 규정되었던 **기타 비용의 사전 통지 조항**을 **온라인쇼핑몰 등 직매입 등**의 **표준계약서**에도 **확대 적용**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자 한다.

* ('20. 1. 14. 제정) 직매입(면세점), 특약매입(면세점), 매장임대차(복합쇼핑몰·아울렛)
('21. 8. 5. 개정) 매장임대차(백화점·대형마트)

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주요 사업자 단체 등 관련 업계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본 개정 표준계약서 사용을 **적극 홍보**하고 **권장**할 계획이다. 또한, 변화하는 **유통 시장 변화**, **업계 요구** 및 **관련 제도개선** 등을 반영하여 기존 유통분야 표준계약서를 **지속적**으로 **보완**해 나갈 계획이다.

※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 전문은 공정위 누리집(www.ftc.go.kr, 해당 메뉴: 정보공개-표준계약서-표준유통거래계약서)에 수록되어 있음

<붙임> 1. 표준유통거래계약서 개정(안) 주요내용
2. 표준유통거래계약서 신구조문 대비표

담당 부서	기업협력정책관 유통대리점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대영 (044-200-4960)
		담당자	조사관	임서연 (044-200-4967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1 **표준유통거래계약서 개정(안) 주요내용**

가. 대금지급 기한의 기산점 명확화

□ **(현황 및 문제점) 대규모유통법상 직매입거래**의 경우에는 **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*** **이내에 대금 지급**하도록 규정

* '27.10월 개정 법률 시행 예정: (특약매입 등) 40일 → 20일, (직매입) 60일 → 35일

○ 공정위는 **상품수령일을 상품인도일(검수 여부와 무관)로 해석***

* '상품수령일'은 상품 인도일을 기준으로 해석하여야 대금지급 기한이 명확해지고, 유통업자의 검사기간 지연 등 자의성이 배제되어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 (공정거래위원회 제3소회의 2026. 2. 11. 의결 제2026-016호)

○ 반면, 현행 표준계약서는 **검수 후 상품수령을 규정**하고 있어, 검수 이후인 **상품입고일을 대금지급 기산일로 오인할 소지**가 존재

[대규모유통업법]	**[직매입 온라인쇼핑몰 표준계약서]**
제8조(상품판매**대금** 등의 **지급**) 제9조(상품 **수령 거부·지체 금지**) 제10조(상품의 **반품 금지**)	제6조(**검수**기준 및 품질검사) 제7조(상품의 **납품**) 제8조(**상품대금 지급** 및 감액금지)

□ **(개정안)** 대금지급 기한의 기산점을 상품인도일로 명확하게 하고, **검수 조항을 대금지급 조항 뒤로 이동**

* 개정 업종: 직매입(백화점·대형마트, 편의점, 면세점, 온라인쇼핑몰) 총 4종

〈 개정(안) 〉

제6조【상품의 납품 · 수령】*조항번호는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 기준

① ~ ② (현행과 같음)

③ "갑"은 "을"이 상품을 납품하면 이를 지체 없이 수령하여 제8조의 검수기준에 따라 검수를 마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"을"이 이 계약에 따라 납품하는 상품을 입고한다.

④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7조【상품대금 지급 및 감액금지】

① "갑"은 해당 상품수령일(상품인도일)부터 ()일 이내에 해당 상품의 대금을 현금, 기업구매 전용카드와 같은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한다.

※ 상품대금은 상품수령일(상품인도일)로부터 60일 이내 지급하여야 함

④ ~ ⑤ (현행과 같음)

나. 기타 비용 부담 내역의 사전 통지 의무 부과

□ **(현황 및 문제점)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을 사전협의 없이** 납품업자에게 **일방적**으로 또는 **과다하게 청구**하는 관행 존재

○ 일부 업태의 표준계약서는 '기타 비용의 사전 통지' 조항을 旣 마련하여 **명시되지 않은 비용 청구를 제한**하고 **부담 기준을 계약 체결시 통지**하도록 함

* '20.1.14. 제정: 직매입(면세점), 특약매입(면세점), 매장임대차(복합쇼핑몰·아울렛)
** '21.8.5. 개정: 매장임대차(백화점·대형마트)

□ **(개정안) 온라인쇼핑몰 등 주요 직매입 업태*** 등의 표준계약서에도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한 사전 통지 의무 조항 신설

* 개정 업종: 직매입(백화점·대형마트, 온라인쇼핑몰, 편의점), 특약매입(백화점·대형마트), 위수탁(온라인쇼핑몰), TV홈쇼핑 총 6종

○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킬 경우, 계약체결 시 그 **내용을 서면 또는 수발신 확인이 가능한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통지**하도록 함

○ **사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되지 않은 비용**은 그 명칭을 불문하고 **추가로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**

〈 개정(안) 〉

제13조【기타 비용의 사전 통지】 *조항번호는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 기준

① "갑"은 물류비, 배송비, 광고비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법 제6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에 명시하지 않은 추가 비용을 "을"에게 추가로 부담시킬 경우, 그 부담 내역, 비용분담 비율 및 변경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계약체결 시 별도의 서면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.)으로 "을"에게 통지하거나, 수발신 확인이 가능한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"을"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또한 동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"을"에게 통지한다.

② "갑"은 제1항의 비용 또는 그 부담 기준을 변경시킬 경우에는 "을"에게 사전 통지하고 협의하여야 한다.

③ "갑"이 "을"에게 제1항의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협의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"갑"은 "을"에게 해당 추가 비용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.

붙임2 **표준유통거래계약서 신구조문 대비표**

현행	개정(안)
제6조 [검수기준 및 품질검사]	<제8조로 조항 이동>
제7조 [상품의 납품] ① ~ ② (생략) ③ “갑”은 “을”이 상품을 납품하면 제6조의 검수기준에 따라 검수를 마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“을”이 이 계약에 따라 납품하는 상품을 지체 없이 수령한다. ④ ~ ⑤ (생략)	제6조 [상품의 납품·수령]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“갑”은 “을”이 상품을 납품하면 이를 지체 없이 수령하여 제8조의 검수기준에 따라 검수를 마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“을”이 이 계약에 따라 납품하는 상품을 입고한다. ④ ~ ⑤ (현행과 같음)
제8조 [상품대금 지급 및 감액금지] ① “갑”은 해당 상품수령일부터 ()일 이내에 해당 상품의 대금을 현금, 기업구매 전용카드와 같은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한다. ※ 상품대금은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하여야 함 ② ~ ⑥ (생략)	제7조 [상품대금 지급 및 감액금지] ① “갑”은 해당 상품수령일(상품인도일)부터 ()일 이내에 해당 상품의 대금을 현금, 기업구매 전용카드와 같은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한다. ※ 상품대금은 상품수령일(상품인도일)로부터 60일 이내 지급하여야 함 ② ~ ⑥ (현행과 같음)
제6조 [검수기준 및 품질검사] ① “을”은 납품하는 상품에 관하여 “갑”의 검수기준에 따른 검수를 받아야 한다. ② ~ ⑥ (생략)	제8조 [검수기준 및 품질검사] ① (현행과 같음) 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현행	개정(안)
<신 설>	**제13조 [기타 비용의 사전 통지]** ① “갑”은 물류비, 배송비, 광고비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법 제6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비용을 “을”에게 추가로 부담시킬 경우, 그 부담 내역, 비용분담 비율 및 변경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계약체결 시 별도의 서면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.)으로 “을”에게 통지하거나, 수발신 확인이 가능한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“을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또한 동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“을”에게 통지한다. ② “갑”은 제1항의 비용 또는 그 부담 기준을 변경시킬 경우에는 “을”에게 사전 통지하고 협의하여야 한다. ③ “갑”이 “을”에게 제1항의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협의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“갑”은 “을”에게 해당 추가 비용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.

* **[상품의 납품·수령]** (㉮제4조, ㉯제6조, ㉰제4조, ㉱제4조)[1)]

[납품대금 지급 및 감액금지] (㉮제5조, ㉯제7조, ㉰제5조, ㉱제5조)

[검수기준 및 품질검사] (㉮제6조, ㉯제8조, ㉰제6조, ㉱제6조)

[기타 비용의 사전 통지] (㉮제11조, ㉯제13조, ㉰제11조, ㉲제13조, ㉳제16조, ㉴제17조)

1) 업종별로 백화점 · 대형마트(직매입)은 ㉮, 온라인쇼핑몰(직매입)은 ㉯, 면세점(직매입)은 ㉰, 편의점(직매입)은 ㉱, 백화점 · 대형마트(특약매입)는 ㉲, 온라인쇼핑몰(위수탁거래)은 ㉳, TV홈쇼핑은 ㉴으로 표기